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	----

제 출 일 자 : 1995. 10.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이었던 일비가 의정활동비로 대체되고 지급요령 등이 보완되어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동조례상 정의의 개념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정함(조례 제2조 제2항)
-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시 보상금 지급기준중 시의원을 시·도의원으로 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함.(조례 제4조 제1항 제1, 2호)
- “직무로 인한 상해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자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발생이나 사망으로 시·도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 또는 2년분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로 시·도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받은 자가 직무상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시·도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조례제4조제1항 후단에 신설하고 동조례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3. 관련법규

- 1) 지방자치법 제32조 2
-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

4. 예산조치 : 없음

5. 조 례 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시의원”을 “시·도의원”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생략) ②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③(생략)	제2조(정의) ①(현행과 같음) ②회의수당이라 회의수당을 ③(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시의원</u>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시의원</u>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략) (후단신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1. <u>시·도의원</u> <u>회의수당</u> 2. <u>시·도의원</u> <u>회의수당</u> 3. (현행과 같음)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삭제)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